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철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춘선, 박환희,
신복자, 옥재은, 윤기섭,
이경숙, 이병윤, 이상욱,
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
한·신, 허·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미비하여 시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.
- 또한 체육활동 중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,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,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의2제1항)
- 나. 시장,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함. (안 제4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“(안전한 환경의 유지·관리 등)”을“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 중 “사항을”을 “사항과 응급전문인력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
2.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
3.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
4.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3092500000004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춘곤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09.25.

회신일 : 2023.09.27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결과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, 제1항제3호의 안내표지판은 기설치하여 운용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제4조의2제2항제3호는 응급전문인력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한 조항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	☎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